

1. 개정이유

내부신고자와 외부신고자가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 보장 등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범위를 외부신고자로 확대하고자 동 지침 명칭을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으로 변경
- 나. 동 지침의 적용범위를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외부인도 포함함(안 제3조)
- 다.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함(안 제7조제8항)
- 라.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도록 규정(안 제9조의2)
- 마.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안 제11조)
- 바. 외부신고자도 신고에 따른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으로 한다.

제3조 중 ““공직자”라 한다)”를 ““공직자”)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로 한다.

제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 카드의 열람) 내지 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직자 등 누구라도 이 규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신변 보호) 감사담당 부서의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자(이하 ‘협조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보호대상 제외)”를 “(불이익의 추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부신고자”를 “신고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제3조(다른 법률(영)의 폐지) ①이 법(영)에 의하여 폐지되는 OO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준비행위)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관한 적용례, 특례)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특례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관한 경과조치)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제7조(다른 법률(영)의 개정) 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u> <u>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u></p> <p>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모든 직원(이하 “<u>공직자</u>”라 한다)에게 적용한다.</p> <p>제7조(신고의 처리) ① ~ ⑦ (생략) <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u> <u>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u> <u>관한 운영지침</u></p> <p>제3조(적용범위) ----- ----- ----- -----“<u>공직자</u>”) 및 <u>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u>--.</p> <p>제7조(신고의 처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 카드의 열람) 내지 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u></p>

제8조(비밀보장) ① 내부신고의 접수 · 조사 · 통지 · 진술 등 처리와 관련된 공직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신설>

제10조(협조자 보호) 이 훈령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분보호 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보장) ① 공직자 등 누구라도 이 규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신변 보호) 감사담당 부서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자 보호) -----

-----자
(이하 '협조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
--.

제11조(보호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 설>

제13조(포상 실시 등) ① 방송통

제11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3조(포상 실시 등) ① -----

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생략)

-----신고자-----

-----.

- 1.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